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대구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구학원(가야대학교,대구공업대학교)의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대구학원(가야대학교,대구공업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 구 분 |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 |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 비고 |
|------------|--------------|---------|-----------------------|---------|
| | 건수 | 금 액(천원) | | |
| 1. 법인 일반업무 | - | | - | 지적사항 없음 |
| 2. 가야대학교 | 2 | 35,133 | 1 | |
| 3. 대구공업대학교 | 1 | 7,200 | 1 | |
| 계 | 3 | 42,333 | 2 | |

- 붙임 : 1. 가야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1부
2. 대구공업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1부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각1부

2016년 4월 20일

학교법인 대구학원
감 사 권 철 진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4401호)
감 사 김 성 우 (인)

※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16년 4월 20일

학교법인 대구학원

이 사 장 이 상 희 (인)



피감사 기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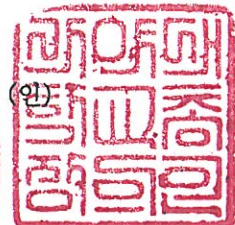
2016년 4월 20일

가야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서 용 규 (인)

대구공업대학교

총 장 이 별 다 (인)



(별지 제1의2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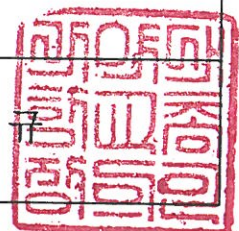
가야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

|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
|---|--|
| <p>1. 업무추진비 사용의 업무관련성 불분명 업무추진비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정산서를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음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나, 보직교원에게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중 일부금액(32,400,000원)이 사용목적 기재 없이 지급관련 기안문과 카드사용명세서만 첨부되어 있어 업무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함.</p> <p>2. 학과사무실 부서운영비 사용 증빙 미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의하면 학과사무실 부서운영비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나, 학과사무실 부서운영비로 지급된 금액 중 일부금액(2,732,890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영수증 등)가 미비하여 학과사무실 부서운영에 관한 업무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함.</p> <p>3. 불용품의 처리 미흡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1조에 의하면 학교의 물품 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은 불용처리 해야 하나, 물품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물품이 망실되어 있음에도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불용품 처리에 미흡함이 발견됨.</p> | <p>1. 업무추진비 사용의 업무관련성 불분명 향후 업무추진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6하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시 해당증빙을 갖추도록 함.(2016년 2월 증빙은 되어 있으며, 2016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해당증빙 관리 철저)</p> <p>2. 학과사무실 부서운영비 사용 증빙 미비 향후 학과사무실 부서운영비 정산시 해당 증빙을 갖추도록 하고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p> <p>3. 불용품의 처리 미흡 2016회계연도 내에 불용처리를 실시하여 원활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p> |

피감사기관장 가야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서 용 규




(교비회계)

(별지 제1의2호 서식)

대구공업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

|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
|--|--|
| <p>1. 학과사무실 운영비 사용 증빙 미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의하면 학과사무실 부서운영비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나, 학과사무실 부서운영비로 지급된 금액 중 일부금액(7,200,000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영수증 등)가 미비하여 학과사무실 부서운영에 관한 업무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함.</p> <p>2. 불용품의 처리 미흡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1조에 의하면 학교의 물품 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은 불용처리 해야 하나, 물품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물품이 망실되어 있음에도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불용품 처리에 미흡함이 발견됨.</p> | <p>1. 학과사무실 운영비 사용 증빙 미비 향후 학과사무실 부서운영비 정산시 해당 증빙을 갖추도록 하고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p> <p>2. 불용품의 처리 미흡 2016회계연도 내에 불용처리를 실시하여 원활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p> |
| <p>피감사기관장 대구공업대학교 총장 이 별 </p> | |

(교비회계)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대구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구학원의 2015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대구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대구학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 없음

2016년 4월 20일

학교법인 대구학원

감사 권철진 (인)

감사 김성우 (인)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법인부장

성명 이현수 (인)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대구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야대학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예산서·운영예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가야대학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1. 업무추진비 사용의 업무관련성 불분명
2. 학과사무실 부서운영비 사용 증빙 미비
3. 불용품의 처리 미흡

2016년 4월 20일

학교법인 대구학원

감사 권철진 (인)

감사 김성우 (인)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경리팀장

성명 임대범 (인)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대구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공업대학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대구공업대학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1. 학과사무실 운영비 사용 증빙 미비
2. 불용품의 처리 미흡

2016년 4월 20일

학교법인 대구학원

감사 권철진 (인)

감사 김성우 (인)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회계과장

성명 강성구 (인)